

연금시장리뷰 8호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퇴직연금으로의 영향

- 본 자료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위해 작성한 현대증권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발행하는 보고서로 퇴직연금 관련 이슈 및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희대학교 : 경제학과 성주호 교수 (02-961-0675, jhsung@khu.ac.kr)

□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퇴직연금으로의 영향

우리나라에 국제회계기준은 2009년부터 도입되었으나, 2010년까지는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들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모든 상장기업이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2011년이 본격적인 도입의 원년이 될 것이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는 기업이 부담금을 납부하여 미래에 퇴직급여를 제공할 책임을 갈음함으로써 회계처리가 간단하다. 하지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최종적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제공할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부채 및 자산의 회계처리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한 퇴직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우선, 퇴직급여부채의 측정에 있어 한국기업회계기준은 추계액 방식으로 계산되나 국제회계기준의 퇴직급여부채 측정방식은 보험수리적 방법인 예측단위적립방식(PUC)으로 산출된다. 이는 평균임금, 근속연수, 이자율(할인율), 임금상승률, 퇴직률에 대한 계리적 가정에 기초하여 산출하는 방식이다. 보험수리적 방법을 이용하여 퇴직급여부채를 산출하면 이자율, 퇴직률은 상승할수록 PBO(보험수리적 퇴직급여부채)를 감소시키며, 평균임금, 근속연수, 임금상승률은 상승할수록 PBO를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보험수리적 방법에 입각한 퇴직급여부채는 기업으로 하여금 개별기업에 적합한 탄력성 있는 PBO를 산정하게 한다. 국제회계기준에서 보험수리적방법으로 퇴직급여부채를 측정함에 따라 보험수리적 손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보험수리적 손익의 상각이라 한다. 보험수리적 손익은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의 차이 또는 가정의 변경에 따라 발생한다. 보험수리적 손익으로 인한 미적립채무(퇴직급여부채-퇴직급여자산)가 퇴직급여부채의 10%를 초과할 경우, 이를 초과한 금액만큼을 평균근속기간내에 인식하여 상각하여야 하며 이를 10% Corridor Method라고 한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퇴직급여부채 측정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한국기업회계기준은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인식하지 않으나, 국제회계기준은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장래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면 이를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보험수리적 방법으로 산출한 재무제표의 금액에 대한 관련 정보와 산출근거를 별도의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방대한 주석공시가 요구된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의 효과는 세가지 측면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퇴직급여제도의 안정화로 인한 근로자의 퇴직급여수급권의 보장이 강화될 수 있다. 둘째, 회계정보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에 개별기업의 특성이 반영됨으로써 기업별 재무의사결정의 장단기 탄력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1.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 우리나라에 국제회계기준이 2009년부터 도입되었으며, 2011년부터 확대시행이 예정되어 있음
 -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들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들은 의무적으로 도입하여야 함
- 우리나라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일시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규정하고 있음
 - 개인퇴직계좌(IRA)는 기본적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운영구조가 같음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기업이 부담금을 납부함으로써 미래에 퇴직급여를 제공할 책임을 같음하므로 회계처리가 매우 간단함. 하지만 확정급여형의 경우, 기업이 최종적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제공할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부채 및 자산의 회계처리가 매우 중요함
 - 따라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침
- 이에 본문에서는 국제회계기준의 내용과 국제회계기준이 퇴직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하겠음

2. 보험수리적 방법을 이용한 퇴직급여부채의 산출

- 퇴직급여부채의 측정방법에 있어, 한국기업회계기준은 추계액방식으로 계산되나 국제회계기준은 보험수리적방식으로 측정됨
 - 이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한 변화 중 가장 영향이 큰 요소라고 할 수 있음
- 한국기업회계기준의 퇴직급여부채 측정방식은 추계액 방식으로서 평균임금과 근속연수에 기초하여 산출됨
 - 이는 기준일 현재 모든 종업원들이 퇴직한다고 가정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의 총액이며, 청산가치기준이라고 함
 - 추계액방식은 계산방법이 간단하여 손쉽게 퇴직급여부채를 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앞으로의 경제상황과 개별기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존재함

○ 국제회계기준의 퇴직급여부채 측정방식은 보험수리적 방법인 예측단위적립방식(PUC)으로 산출됨. 이는 평균임금, 근속연수, 이자율(할인율), 임금상승률, 퇴직률에 대한 계리적 가정에 기초하여 산출됨

- 임금상승률에 대한 합리적인 가정을 수립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점의 임금수준을 예측하고 이로부터 퇴직부채의 미래가치를 계산하고, 이에 대해 합리적인 이자율(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구하여 이를 퇴직급여부채로 인식함

-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된 퇴직급여부채를 PBO 라고 함

- 이는 산출과정이 복잡하고, 이자율이나 임금상승률, 근로자의 연령 등과 같은 변수에 의해 PBO 의 변동성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으나, 향후 예상되는 경제상황과 개별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PBO 의 산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존재함

○ 이자율(할인율)의 상승은 PBO 를 감소시키며, 임금상승률의 상승은 PBO 를 증가시킴. 즉, 순이자율(이자율-임금상승률)의 상승은 PBO 를 감소시키며, 하락은 PBO 를 상승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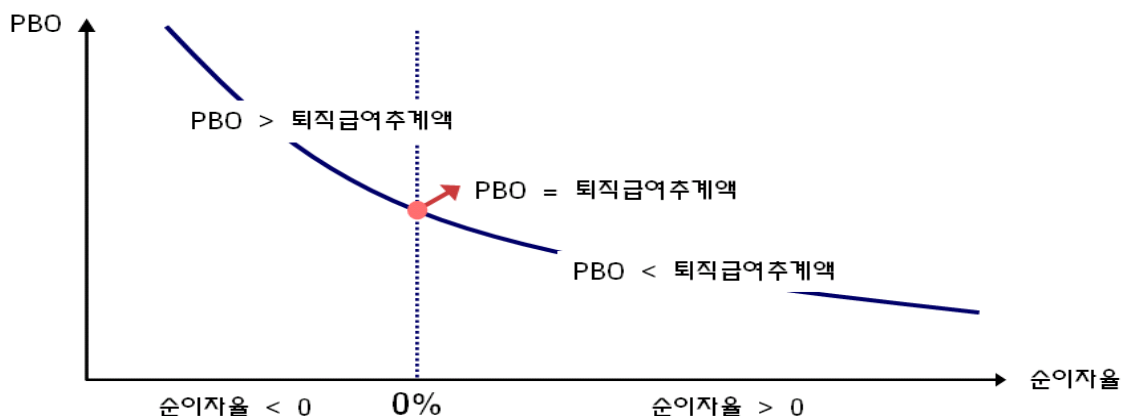
- PBO 는 현재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지 않고, 근로자의 예상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계산됨. 따라서 임금상승률이 상승하면 평균임금이 상승하여 PBO 는 증가하게 됨

- 또한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산정된 PBO 를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이자율(할인율)을 적용하게 됨. 따라서 이자율(할인율)이 상승하면 PBO 는 감소하게 됨

○ 따라서 PBO 는 이자율에서 임금상승률을 차감한 순이자율에 따라 증감하게 됨

- 순이자율이 상승하면 PBO 는 감소하고, 감소하면 PBO 는 증가하게 됨. 그리고 순이자율이 0 이라면 PBO 는 퇴직급여추계액과 같아지게 됨. 간략히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음

< 순이자율의 변화와 PBO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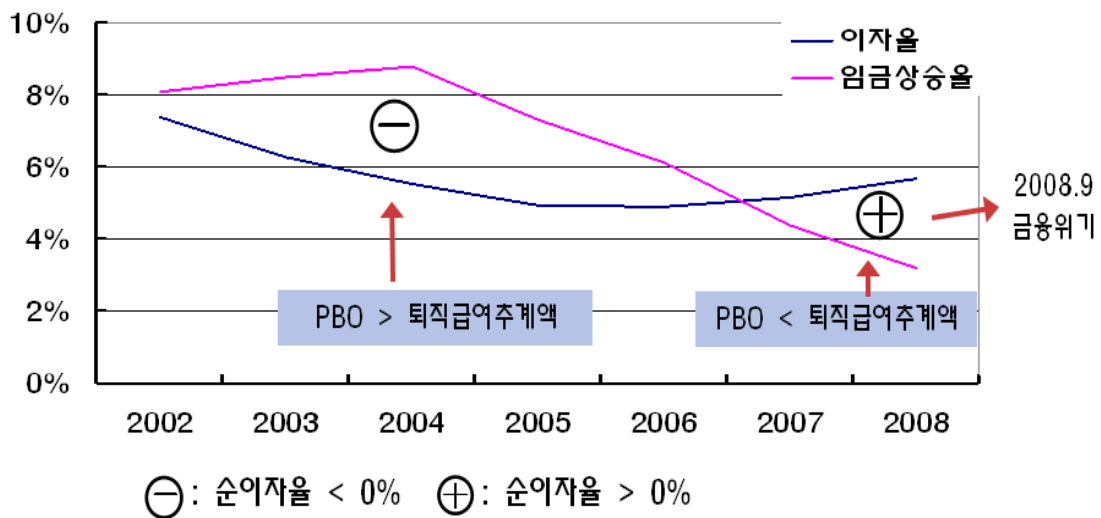
○ 다르게 말하면, 경제상황에 따라 PBO 는 퇴직급여추계액보다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음

- 경제가 호황기라면, 일반적으로 임금상승률은 상승하고 이자율은 하락하여 순이자율이 음수가 됨. 이는 PBO 를 퇴직급여추계액보다 크게 산정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옴
- 경제가 불황기라면, 일반적으로 임금상승률은 하락하고 이자율은 상승하여 순이자율이 양수가 됨. 이는 PBO 를 퇴직급여추계액보다 작게 산정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옴

○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상황에 따라 순이자율이 변함으로써 PBO 가 퇴직급여추계액보다 크게 산출되기도, 작게 산출되기도 함

- 아래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상황이 양호했던 2000년대 초반에는 PBO 가 퇴직급여추계액보다 크게 산출되었지만,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던 2008년도에는 PBO 가 퇴직급여추계액보다 적게 산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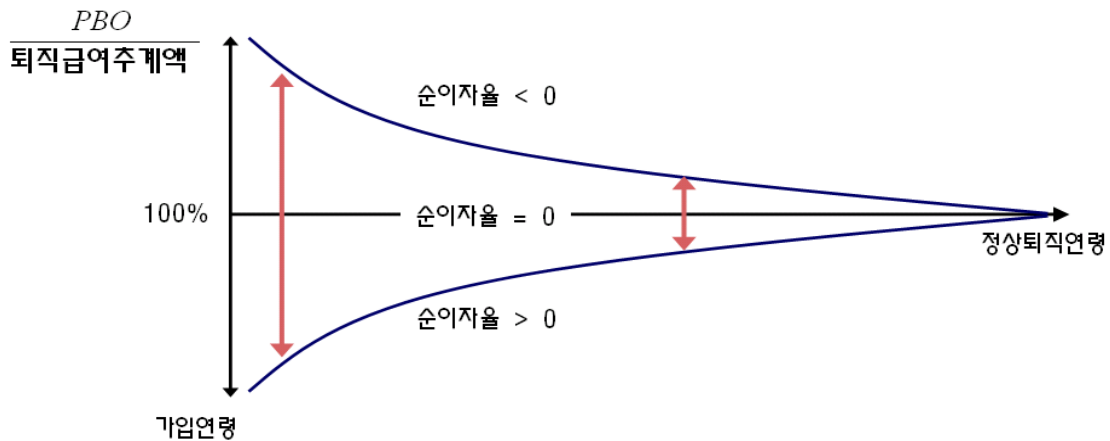
< 순이자율의 변화추이 >



○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순이자율이 PBO 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달라짐

- 근로자의 연령이 어려 퇴직시점까지의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 임금상승률과 이자율이 적용되는 기간이 길어짐. 따라서 퇴직시점이 얼마남지 않은 근로자들에 비해 순이자율이 PBO 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
- 따라서 근로자의 연령이 퇴직시점에서 멀수록 PBO 와 퇴직급여추계액간의 비율차이는 커지며, 근로자의 연령이 퇴직시점에 가까워 질수록 PBO 는 순이자율에 상관없이 퇴직급여추계액과 같은 액수로 수렴하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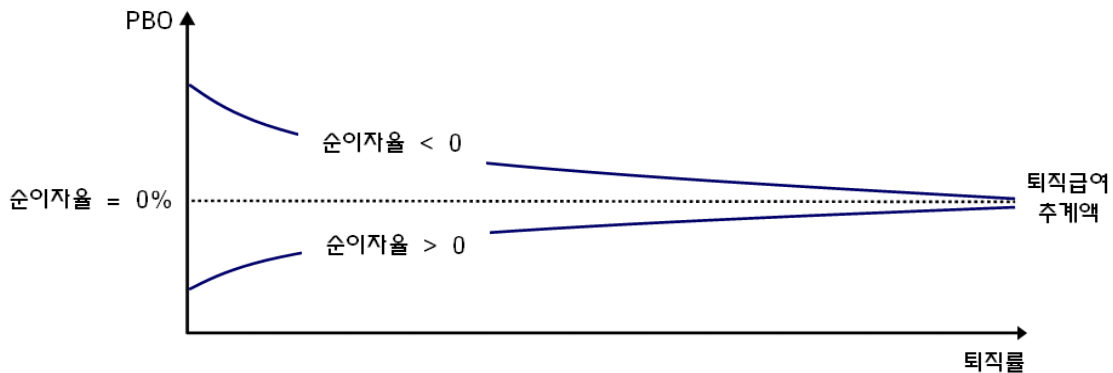
< 근로자연령에 따른 PBO 변화추이 >



○ 퇴직률이 높아질수록 PBO 는 순이자율에 상관없이 퇴직급여추계액의 액수에 수렴함

- 따라서 퇴직률(이직률)이 높은 기업의 경우, 순이자율에 상관없이 PBO 는 퇴직급여추계액으로 수렴함
- 그러나 퇴직률은 상대적으로 순이자율이 PBO 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그 영향력이 매우 미미함

< 퇴직률과 PBO 변화추이 >



○ 결론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한 보험수리적 방법에 입각한 퇴직급여부채는 기업으로 하여금 개별기업에 적합한 탄력성있는 PBO 산정을 가능하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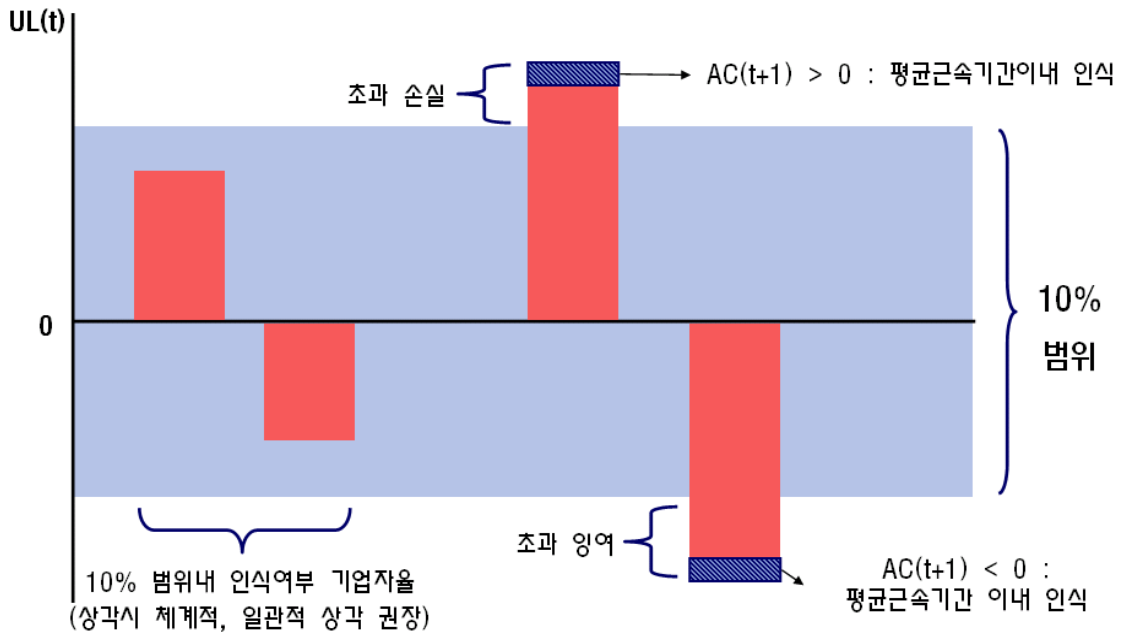
- 그러나 경제상황과 근로자의 연령구조에 따라 PBO 의 변동성이 커진다는 단점 또한 가짐
- 따라서 기업의 재무담당자는 연금계리에 대한 심도 높은 자문을 요구하게 될 것임. 이는 금융기관의 연금계리자문 전문성이 더 한층 요구됨을 의미함

3. 보험수리적 손익의 상각

○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보험수리적방법으로 퇴직급여부채를 측정함에 따라 보험수리적 손익(Actuarial gains & losses)이 발생함

- 보험수리적 손익은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의 차이 또는 가정의 변경에 따라 발생함. 보험수리적 손익은 이자율(할인율), 임금상승률, 퇴직률 등의 변경이나 기대투자수익률과 실제 투자수익률의 차이 또는 제도변경 등에 의해 발생함
- 보험수리적손익으로 인한 미적립채무¹가 퇴직급여부채의 10%를 초과할 경우, 이를 초과한 금액만큼을 평균근속기간내에 인식하여 상각하여야 함. 이를 10% Corridor Method 라고 함
- 예를 들어 평균근속기간이 10 년이고, 퇴직급여부채의 10%를 초과하는 보험수리적 손실이 \$100 라면, \$100 의 1/10 인 \$10 을 차기 회계연도에 인식하여 추가적으로 최소한 상각적립하여야 함
- 이는 국제회계기준에서 강제하는 방법이 아니라 권장하는 최소수준임임. 그러므로 기업에서는 필요에 따라 보험수리적손익을 즉시 반영하는 상각법을 사용해도 됨

< 보험수리적 손익 상각방법 >



¹ 퇴직급여부채 - 퇴직급여자산

○ 만약 보험수리적 손익이 발생하는 즉시 재무제표에 반영한다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기업의 당기순이익이 보험수리적 손익으로 인해 당기순손실로 바뀔 수 있음
- 이는 기업경영의 입장에서 매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회계정보의 질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회계정보이용자가 잘못 판단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또한 보험수리적 손익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익과 손해가 번갈아가며 발생하여 서로 상쇄될 가능성이 높는데, 이를 즉시 반영하면 상쇄의 기회를 상실하게 됨

○ 따라서 10%란 보험수리의 추정오차가 허용되는 한도라고 할 수 있음

- 즉, 10% 범위 안의 오차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반대손익으로 상쇄될 수 있지만, 10%범위 밖의 오차는 추후 상쇄될 가능성이 낮아 강제적으로 상각시켜야 한다는 것임
- 10%의 오차를 허용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험수리적 손익이 기업의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보험수리적 손익의 상각에 따른 회계처리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4. 기타 변화

○ (퇴직급여부채 측정대상 확대) 퇴직급여부채 측정대상의 인식에 있어 한국기업회계기준은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인식하지 않으나, 국제회계기준은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장래지급대상이 되면 인식하여야 함

- 따라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도 퇴직급여부채 측정의 대상으로 인식하여야 함
- 이로 인해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현행에 비해 퇴직급여부채가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함

○ (방대한 주식 공시 요구) 기본적으로 보험수리적 퇴직급여부채의 측정은 이자율(할인율), 임금상승률 등의 변수들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 측정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음

- 재무제표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확정된 금액이 아닌 추정에 근거한 PBO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힘들. 이로 인해 PBO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게 됨
- 예컨대 임금상승률이나 이자율(할인율), 퇴직률 등에 대해 무엇을 근거로 가정을 수립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게 됨
- 따라서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보험수리적 방법으로 산출한 재무제표금액에 대해 관련 정보와 산출근거를 별도의 주석으로 하여 공시하여야 함

5. 국제회계기준의 도입효과

○ 퇴직급여제도가 안정화됨

-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전에는 퇴직급여부채가 기간이 흐름에 따라 체증하여 기업의 부담금 납입부담 또한 체증하였음
-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에는 시간흐름에 따른 퇴직급여부채의 체증이 상당부분 완화되어 기업의 연도별 부담금 납입부담이 평준화됨
- 따라서 퇴직급여부채의 재정건전성 제고로 근로자의 퇴직급여수급권 보장이 강화됨

○ 회계정보의 질 향상이 이루어짐

- 재무제표 이용자가 기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해짐
- 국제적 정합성과 회계적 투명성이 증대됨
- 회계적으로 중요한 정보의 누락이 방지됨
- 결론적으로 기업의 가치산정에서 퇴직부채가 보다 정확하게 반영됨

○ 재무제표에 개별기업의 특성이 반영됨

- 개별 기업의 독특한 퇴직급여제도나 임금상승률, 근로자의 평균근속기간, 이직률 같은 특성을 반영 가능함
- 이는 기업별 재무의사결정의 장·단기 탄력성을 제고할 개연성이 높음

경희대학교 성주호 교수 (02-961-0675, jhsung@khu.ac.kr)